의안번호	제446호
의결연월일	2017.12.7.

-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7. 11. 20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: 2017. 11.22. 산업건설위원회
- 상 정 일 자: 2017. 12. 7.

제236회 예산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)

가. 제안이유

-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·수탁 협약기간 만료 (2017. 12. 31.)에 따라 전문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존 운영관리업체인 「(주)티에스케이워터, ㈜ 부원건설」과 위·수탁 협약기간을 갱신하여 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 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재위탁에 따른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(재위탁)

○ 위탁기간: 2018. 1. 1. ~ 2020. 12. 31.(3년)

시 설 명	위 치	운영방식	최초위탁	위탁기간(예정)
			2000.12.09	
예산군 공공하수처리 시설 (예산하수처리장외19개소) 일원	예산군 일원		2009.01.01 (압찰)	2018. 01. 01.~ 2020. 12.31. (3년)
			2015.01.01 (압찰)	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: 박 상 덕)

-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산하수처리장외 19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 위탁・관리하기 위하여
-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 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·답변요지
 - 생 략
- 5. 토 론 요 지
 - 생 략
- 6. 심 사 결 과
 - ○「원안가결」
- 7. 소수의견 요지
 - 없 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
 - 없 음